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차시 목록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2차시.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3차시. 노인학대의 신고요령

4차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알기

■ 학습개요

> 학습내용

1. 노인인권이란?
2. 아동학대
3. 노인학대
4. 장애인학대

■ 본 학습

1. 노인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노인인권은 노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접을 받거나 혹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 인권의 대상이 노인으로 한정될 뿐이다. 즉, 노인의 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이석준, 2001; 박수천, 2005; 권중돈, 2012)이다. 노인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노인만을 위한 혜택, 특수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노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가? 노인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현대의 노인을 과거의 노인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노인은 특수한 존재가 아닌 한사람이 태어나서 생의 단계를 거쳐서 도달하게 되는 인격체라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노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의 질문을 생각하면, 노인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존경의 개념보다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배려의 대상일 수 있다. 또한 과거와 현대의 노인은 같은 사람이지만, 신체적 측면에서 훨씬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반감과 편견을 떨치면 노인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UN)에서는 여성(1979년), 아동(1989년), 이주노동자(1990), 장애인(2006년)에 대한 인권협약이 채택되었지만, 아직 노인권리협약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즉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조약이 없으며, UN을 통해 제시되어 온 원칙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인구고령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노인권리협약 체결에 대한 국제적 담론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이 등장한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다. ‘세계인권선언’은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채택되어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25조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고령을 포함하였다.

제25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와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업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노령**이나 불가항력적인 여타의 상황 속에서 겪는 생계 곤란을 당한 경우에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1982년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가 개최하고 ‘비엔나국제고령화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각국 **정부**는 노인의 인권보장 의무를 맡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국민이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1991년 12월 유엔총회를 통해 노인인권의 근간이 되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이 결의되었다. 노인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반영해야 할 의무와 원칙을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이라는 5개 군 18개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돌

봄과 존엄성의 원칙을 통해 학대방지를 제시하였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독립 (Independence)

1.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6.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여 (Participation)

1.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Care)

1.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1.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2.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성 (Dignity)

1.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UN은 1999년을 ‘세계노인의해’로 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고,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UN 세계고령화총회에서 마드리드국제고령화 행동계획(MIPAA)이 채택되었다. MIPPA에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 고령화와 노인의 권리에도 눈을 돌리고, 안전과 존엄이 보장된 노후를 위한 시민권 및 지속적 사회참여 보장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의존적 노인

이 아닌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노인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제고,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 철폐를 결의하였다.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MIPAA)]

1.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노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
2. 노년기의 빈곤해소라는 목표 및 노인을 위한 UN칙에 대한 재확인을 통한 노후 안정성 확보
3. 노인들이 소득활동과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의 역량 강화
4. 노인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노후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자기개발, 자아실현 및 복지의 기회 제공
5.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
6. 성차별의 철폐를 통한 노년기의 성평등 달성
7.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가족, 세대간 상호의존성,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
8. 예방 및 재활관련 보건요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요, 지원, 사회적 보호의 제공
9. MIPAA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에 있어 정부, 시민사회, 민간영역, 노인 간의 협력관계 촉진
10. 개도국의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특히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갖는 영향력에 초점을 둔 기술적 잠재력 구현
11.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 고유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 모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도 국제적 인권규범의 영향과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정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2조에는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권리를 지니고 동시에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노인인권침해의 극단적 형태인 노인학대 문제에 정부적 차원에서 개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 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과 비교할 때 노인인권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 간 노인인권을 위한 국내의 노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인권을 위해 2009년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정·공표하며, 노인인권을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제시하였다.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의 권리]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⑤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⑥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⑦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⑧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해결을 요구할 권리, ⑨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이용, 제반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행사의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을 통해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이라는 3가지 권리보장을 노인인권증진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인인권규범을 공표하였으며, 시설 내 인권 옴부즈맨인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고려화에 따른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아셈회원국 등 40개국이 모여 국제동향 등을 논의하고, 특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장성명을 통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8년 6월 아셈노인인권 정책센터를 개소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및 시설 내 발생하는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통해 노인인권 문제에 접근하였다.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노인인권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기에 노인학대를 노인인권 관점에서 다루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설 내 옴부즈맨 운영, 노인인권감수성교육, 성년후견제도연구 등 노인인권과 관련한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2. 노인인권의 현황

노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노인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나이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관계 및 제반 활동 능력이 제한되고 불평등과 부적절한 처우를 받는 것은 연령차별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사회에서 연령차별은 노인차별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령차별과 유사개

념으로는 연령주의와 연령규범이 있다.

- * 연령주의 : Butler(!969)최초 사용, 나이드 사람들에게 대해 체계적으로 정형화 하고 차별하는 과정과 태도
- * 연령규범 : 특정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이나 행동

대표적 연령차별의 유형은 직·간접적 차별, 괴롭힘, 희생화, 고용차별, 재화나 서비스 분배에서의 연령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령차별 경험을 통해 노인들은 고립감과 두려움, 우울한 감정,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연령차별(노인차별주의)는 왜 생기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년이 강제적으로 의무화 되면서 이러한 믿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노인은 융통성이 없고 매너가 부족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남에 말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 불리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 등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연령차별은 이러한 노화와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생긴 사회적 학대라 볼 수 있다.

<2014 국가인권위원회 연령차별 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2014	2013	2012	2011	2010
차별행위 진정접수	2,198	2,496	2,549	1,803	2,681
	100	100	100	100	100
연령차별	103	142	166	146	196
	4.7	5.7	6.5	8.1	7.3

또한 현재 노인세대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이기에, 무지에 의해 노인이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가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老-老학대’이다. 그리고 인권침해를 당해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방법을 몰라서 참고 사는 경우도 많다. 노인인권침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병원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중 시설학대로 분류되고 있다. 시설 내 노인인권침해는 무분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종교의 자유 박탈, 자유로운 면회 제한, 핸드폰 사용 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시설종사자나 입소 노인 모두가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3.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자의 역할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2018년 기준 신고의무자의 직군이 15개로 늘어났지만,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전문가들로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성직자, 법률 및 경제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신고

의무자 직군이 구성되어 있는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 신고로 이어지는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본인이 학대를 받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거나 대처방법을 모르는 대다수의 학대피해노인의 삶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

만약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해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국번없이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나는 늙어 봤나 나는 젊어봤다’라는 노래 제목이 있다. 또한 늙음은 죄가 아니다. 단지 젊은이에게는 다가올 미래 모습이고, 늙은이에게는 삶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일생을 걸쳐 나이 드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노인인권은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학습정리

▶ 정리하기

1. 노인인권이란?

노인인권은 노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접을 받거나 혹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 인권의 대상이 노인으로 한정될 뿐이다. 즉, 노인의 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이석준, 2001; 박수천, 2005; 권중돈, 2012)이다. 노인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노인만을 위한 혜택, 특수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2. 노인인권의 현황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년이 강제적으로 의무화 되면서 이러한 믿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노인은 융통성이 없고 매너가 부족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남에 말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 불리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 등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노인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연령차별(노인차별주의)은 이러한 노화와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생긴 사회적 학대라 볼 수 있다.

3.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자의 역할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 신고로 이어지는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본인이 학대를 받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거나 대처방법을 모르는 대다수의 학대피해노인의 삶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5
- 정경희 외, 노인인권 국제 동향 및 국내 현안에 관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2015
- 권중돈 외, 노인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4
- 보건복지부,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
- 보건복지부,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2000